

# 특수대학원 학칙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특수대학원 통합학칙은 호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특수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교육목표)** 특수대학원은 실용성·창의성·전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목표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해당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제3조 (대학원의 명칭)** 본교에 두는 특수대학원의 명칭은 각각 호서대학교 경영대학원,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 1. 26)
- 제4조 (과정)** ① 각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각 특수대학원에 외국대학원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다른 공동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1)
- 제5조 (학과 및 정원)**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 3. 1, 2011. 3. 1, 2012. 3. 1, 2013. 8. 26, 2014. 3. 1, 2015. 1. 26, 2016. 3. 1, 2017. 3. 1, 2017. 9. 1, 2018. 3. 1, 2018. 10. 17, 2019. 2. 26, 2019.10.28., 2023. 2. 6.)

## 제 2 장 입 학

- 제6조 (입학시기)**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 제7조 (입학자격)**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특수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중 현직 교직원 및 교원자격증소지자로 하며, 영양교육전공은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 자
  2.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 제8조 (지원절차)**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9조 (입학전형방법)**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면접시험에 의하여 전형한다. 다만, 글로벌창업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 26)
- 제10조 (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7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 제11조 (재입학)** 각 특수대학원 학생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제12조 (재입학 학생의 학점 인정)** 재입학 한 학생이 퇴학 및 제적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3조 (편입학)**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 제14조 (외국인)** ① 외국인으로서 제7조의 자격이 있는 자가 입학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지 않고 정원 외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육과정, 이수학점 및 수료**

**제 15조 (수업일수 및 수업)** ①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각 학과별로 행하고, 계절수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글로벌창업대학원은 주간에도 할 수 있다.

**제 16조 (수업연한)** ① 각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 연구과정은 1년(2학기)으로 한다. 다만, 글로벌창업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개정 2018. 3.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2항의 학위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는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

**제 17조 (이수과목)**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특수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8조 (수료 시기 및 학점)** ① 각 전공과목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수료하기 위한 최저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글로벌창업대학원은 27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2018. 3. 1)  
 ③ 연구과정 학생이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19조 (학점의 특별인정)** ① 국내의 타 대학원이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써 각 특수대학원의 설강 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과교수회의 사정을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한다.  
 ② 재학 중 본 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9학점까지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취득 학점은 사정을 거쳐 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③ <삭제 2013. 3. 1>  
 ④ <삭제 2018. 3. 1>

**제 20조 (학점인정)** 학점 인정은 강의시간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 21조 (성적의 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17)

등급	점 수	평 점	등급	해 설
A <sup>+</sup>	95 - 100	4.5	I W P NP	Incomplete(성적보류) Withdraw (수강철회) Pas (합격) Non Pass (불합격)
A <sup>0</sup>	90 - 94	4.0		
B <sup>+</sup>	85 - 89	3.5		
B <sup>0</sup>	80 - 84	3.0		
C <sup>+</sup>	75 - 79	2.5		
C <sup>0</sup>	70 - 74	2.0		
D <sup>+</sup>	65 - 69	1.5		
D <sup>0</sup>	60 - 64	1.0		
F	이하	0.0		

② 학업성적 I는 성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부여되며, 당해 학기 내 확정성적을 제출하면 그 성적이 학적부에 기재된다.

(당해 학기 내 성적이 평가되지 않으면 I는 F로 평가된다.)

##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2조 (등록)** 학생은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최소 5학기(글로벌창업대학원은 4학기)의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에 따라 정규등록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 2018. 10. 17)

**제23조 (등록금)** ①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휴학)** 휴학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 제3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3. 1]

**제25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이를 제적 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1. 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개시 30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5.12.23)
2. 매 학기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대학원위원회가 확인하고 징계를 의결한 자.(개정 2015.12.23)

## 제 5 장 전과와 전공변경

**제28조 (전과)** 각 특수대학원 학과간의 전과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9조 (전공변경)** 전공의 변경은 동일계열에 한하며,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공을 변경한 자의 기 이수 학점은 변경된 전공의 교과과정에 맞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전공의 변경은 1학기 이수 후 2학기 등록기간 내에 한다. (개정 2015. 1. 26)

**제30조 (전공변경절차)**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공 변경원(소정양식)
2. 신·구 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서
3. 이수학점 및 성적 증명서

## 제 6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1조 (학칙준수)** 특수대학원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여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32조 (장학금)** 특수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 7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 제33조 (공개강좌)** ①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 또는 단기연수과정 등을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및 연구의 심오한 학술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공개강좌의 과목, 주제,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발표한다.
- ④ 공개강좌의 수료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9. 2. 26)
- 제34조 (연구생)** ①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 할 수 있다
- ② 연구생의 입학 허가는 매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연구생 과정의 수업 기간은 2개 학기 이내로 한다.
-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9. 2. 26)
- ④ 연구생이 정규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제35조 (수강료)** ①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강료를 실비에 한하여 수강생에게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본 특수대학원 재학생이 수강코자 할 때에는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연구생 수강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 제 8 장 학위청구 자격시험

- 제36조** (삭 제 2019. 2. 26)
- 제37조 (종합시험)** ① 석사학위과정은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종합시험은 4학기 등록 후 응시할 수 있다. 단, 글로벌창업대학원은 3학기 등록 후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 9. 1, 2017. 3. 1, 2019. 2. 26)

## 제 9 장 학위청구논문과 심사

- 제38조 (논문계획서 제출)** 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21, 항 신설 2015. 1. 26)
- ② 논문계획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6)
1. 학위논문연구윤리준수확인서
  2. 학위논문지도에서의 연구윤리준수확인서
- 제39조 (학위논문 대체)** 석사과정 학생 중 학위논문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이하 “논문대체”라 한다)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을 대신하여 기본이수과목 등 전공과목 중에서 2과목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창업대학원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이수과목을 1과목 이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8. 3. 1]
- 제40조 (논문작성)** 논문계획의 승인을 받은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2학기(글로벌창업대학원은 1학

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2018. 3. 1)

**제41조 (논문규격)** ①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 규격은 일반대학원의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42조 (논문제출)** ① 논문심사가 완료된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에 업로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2023. 2. 6.)

② 논문심사가 완료된 학위논문은 업로드 후,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6., 개정 2023. 2. 6.)

**제43조 (심사위원)** 제출된 학위논문은 교내 관련분야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위원 1인(타 대학 전임교수 또는 학계 권위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2018. 3. 1)

**제44조 (심사 및 구술시험)**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논문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행한다.

**제45조 (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이때,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4. 21, 2015. 1. 26)

**제46조 (심사의결)** ①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한다.

②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보고서에 심사요지와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장은 이를 첨부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특수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재심사)** 학위논문이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 · 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재 심사받을 수 있다.

## 제 10 장 학위의 수여

**제48조 (학위수여 자격)** ①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4. 4. 21, 2017. 9. 1, 2018. 3. 1, 2020. 3. 1.)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 4. 21, 2019. 2. 26)
4. 제22조에 따른 정규등록을 마치고 논문연구계획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서 2학기(글로벌창업대학원은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5. 논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
6. 논문대체 자는 제1호 이외에 추가로 2과목(글로벌창업대학원 학생 중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1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7.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15. 1. 26, 개정 2020. 3.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

1.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가. 총 취득학점이 27학점(논문대체자는 30학점) 이상인 자

나. 취득학점의 평점 평균이 4.3 이상인 자

2. 글로벌창업대학원

가. 총 취득학점이 30학점(논문대체자 중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33학점, 논문대체 과목 이수자는 36학점) 이상인 자

나. 취득학점의 평점 평균이 4.3 이상인 자

**제49조 (학위수여)** 학위수여 사정 및 시기는 일반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학위종별)** 각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학생의 전공 분야에 따라 별표 2로 정한다. (개정 2010. 3. 1, 2012. 3. 1, 2014. 3. 1, 2015. 1. 26, 2015. 4. 22, 2017. 3. 1, 2017. 9. 1, 2018. 3. 1, 2018. 10. 17, 2019. 2. 26, 2019.10.28., 2021.9.15., 2023. 2. 6.)

### 제 11 장 직제와 위원회

**제51조 (직제)** 각 특수대학원은 대학원장 외에 각 학과에는 학사 및 연구지도를 담당할 주임교수 1인을 둘 수 있다.

**제52조 (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에 설치된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9. 3. 1)

② (삭제 2009. 3. 1)

③ (삭제 2009. 3. 1)

**제53조 (위원의 임기)** (삭제 2009. 3. 1)

**제54조 (위원회의 기능)** (삭제 2009. 3. 1)

**제55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삭제 2009. 3. 1)

### 제 12 장 보 칙

**제56조 (주임교수회)** 각 특수대학원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특수대학원에 주임교수회를 둘 수 있다.

**제57조 (준용규칙)** 이 특수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제58조 (시행규칙)**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통합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호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칙,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학칙, 호서대학교 코칭능력개발대학원 학칙,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학칙은 폐지된다.

제3조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통합학칙의 시행으로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불구하고 해당 특수대학원의 구 학칙을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은 실버산업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3)**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36조 및 제37조는 2017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학과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 중 학과신설 또는 학과명칭을 변경한 스포츠과학대학원의 골프클럽피팅학과, 골프지도학과와 스포츠테라피학과의 입학생은 2018학년도 후기부터 모집한다.

**제3조 (학위명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문화복지상담대학원 노인복지학과 학위명 변경은 2018년 2월 졸업자부터 소급적용하고, 스포츠과학대학원 및 글로벌창업대학원의 학위명 변경은 2018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스포츠과학대학원 골프산업학과와 레저스포츠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골프지도학과와 스포츠테라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개정 전 학칙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고 졸업요건은 변경 전 학과의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학과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신설한 문화복지상담대학원 공공정책학과의 입학생은 2019학년도 전기부터 모집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9. 15.)**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6.)**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전문개정 2018. 3. 1, 2018. 10. 17, 2019. 2. 26, 2019.10.28.,2023. 2. 6.)

###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제5조 관련)

구 분		석사학위과정	정원	박사학위과정	정원	
특수대학원		총계	143명	총계	-	
대학원	캠퍼스	계열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경영	천안	인문사회	경영학과	10명		0
경영대학원 계			1개 학과	10명		0
교육	천안	인문사회	교육행정전공	20명		0
			상담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교육대학원 계			12개 학과	20명		0
문화복지 상담	천안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50명		0
			상담심리학과			
			청소년문화상담학과			
			패션뷰티비즈니스학과			
			문화콘텐츠창작학과			
			노인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교육진로컨설팅학과			
			한중비즈니스통번역학과			
			공공정책학과			
문화복지상담대학원 계			10개 학과	50명		0
스포츠과학	아산	예체능	스포츠산업학과	23명		0
			스포츠지도학과			
			골프지도학과			
			스포츠테라피학과			
			건강관리학과			
			골프클럽피팅학과			
스포츠과학대학원 계			7개 학과	23명		0
글로벌창업	서울	인문사회	창업경영학과	30명		0
			창업컨설팅트학과			
글로벌창업대학원 계			2개 학과	30명		0
산학융합	당진	공학	에너지융합산업학과*	10명		0
산학융합대학원 계			1개 학과	10명		0

※ 2023학년도 전기 신입학자부터 적용

※ \* 표는 신설학과

(별표 2)(개정 2018. 3. 1, 2018. 10. 17, 2019. 2. 26, 2019.10.28., 2021. 9. 15., 2023. 2. 6.)

### 학위종별표 (제50조 관련)

대학원명	학과명	학위명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교육학석사(교육행정전공)
	상담교육전공	교육학석사(상담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교육학석사(유아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영어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교육학석사(윤리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중국어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교육학석사(수학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교육학석사(환경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교육학석사(컴퓨터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교육학석사(체육교육전공)
문화복지상담대학원	교육진로컨설팅학과	교육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석사(상담심리학전공)
	청소년문화·상담학과	문학석사(청소년문화·상담학전공)
	문화콘텐츠창작학과	문학석사(문화콘텐츠창작학전공)
	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석사
	패션뷰티비즈니스학과	미용학석사
	패션비즈니스학과	<삭제>
	노인복지학과	노인복지학석사
	영유아보육학과	사회복지학석사
	한중비즈니스통번역학과	문학석사(영유아보육학전공)
	공공정책학과	통번역학석사
스포츠과학대학원	스포츠산업학과	문학석사(공공정책학전공)
	스포츠지도학과	체육학석사(스포츠산업학전공)
	골프지도학과	체육학석사(스포츠지도학전공)
	스포츠테라피학과	체육학석사(골프산업학전공)
	건강관리학과	체육학석사(레저스포츠학전공)
	골프클럽피팅학과	체육학석사(건강관리학전공)
		체육학석사(골프클럽피팅전공)
글로벌창업대학원	창업경영학과	경영학석사(창업)
		경영학석사(글로벌창업)
		경영학석사(지식서비스창업)
	창업컨설팅학과	경영학석사(창업컨설팅)
		경영학석사(자산관리컨설팅)*
	경영학석사(시니어비즈니스컨설팅)	
산학융합대학원	에너지융합산업학과 *	공학석사

※ 2023학년도 전기 신입학자부터 적용

※ \* 표는 신설학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2. 26)

증서번호 제0000호

## 수 료 증

성 명 : 0 0 0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000대학원 00학과(0000전공) 00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호서대학교 000대학원장 00학박사 0 0 0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00학박사 0 0 0 (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 2. 26)

제 0000 호

## 연구실적증명서

성 명 : 0 0 0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000대학원 000학과(000전공) 연구과정에서 1년간(20    년    월    일 ~    년    월    일)을 연구하였기에 그 실적을 증명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000대학원장 00학박사 0 0 0 (인)

(별지 제3호 서식)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이 있는 경우)(개정 2019. 2. 26)

석 제 0000 호

##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석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석)○○○

(별지 제3호의 1 서식) 특수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교과목 추가이수과정)(개정 2019. 2. 26)

석 제 0000 호

##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석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석)○○○

(별지 제3호의 2 서식)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영문학위기(개정 2019. 2. 26)

# H O S E O U N I V E R S I T 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Faculty  
has conferred upon

○ ○ ○

the degree of  
Master of ○○○  
in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obligation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the Graduate School of ○○○, Hoseo University,  
this ○○ day of ○○, ○○○○

---

○○○

Dean, Graduate School of ○○○

---

○○○

President of the University